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총회장,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총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총회의 능률적인 회무 진행을 도우려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의 위원은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천위원회에서 해당 총회 목사 회원 6인, 장로 회원 5인을 공천한다.

제4조 (위원 공천)

본 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제7조 (공지)

본 위원회는 선거에 임하여 총회의 경과사항을 보고하며, 투표 전에 투표표 요령과 방법을 총회원에게 알린다.

제8조 (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및 시행)

1. 본 위원회 규정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통과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위원회는 선거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